③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25년 참여 공공연구기관(11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변동가능)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 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o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추가연장 지원 [*]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 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5. 1. 31(금) ~ '25. 12. 31(화)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인력 매칭) https://smtech.go.kr/region/rpms/main/main.do → 연구인력 수요 기업
 → 공동인증서 인증 → 지원수요서 작성 → 연구인력 매칭
 - (과제 신청)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 (신청서류)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 → ② 평가 → ③ 기업통보 → ④ 파견지원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다. 가점 및 감점항목

○ 가점항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 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2점	표창장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최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법」제10조 및「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 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본사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시업자등록증 및 접수미감알(25.3.4)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8로 확인)		
	최근 3년 이내(2022.3.5.~2025.3.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 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 임치 시작과 종료일이 해당기간(2022.3.5.~2025.3.4.) 안에 포함되면 가점인정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5점	
사업별 가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3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시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점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3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 접수미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합회 확인		
	위기징후 밀집지역(주의·심각단계) 소재 기업	1점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 감점항목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전문기관 확인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 평가항목: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 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마.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 기타 제외기준은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참조

바.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 개발 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 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신청서류

мн	IJ AJ FB			제출서류		ᆌᄎᄔᄖ		
연번		서 식 명			해당시	제출방법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매월 신청마감일의 본문2 익일로 기재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본문1		0		시스템 직접 입력 www.sm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u>.</u>			0					
2	(대차대 * 국세경	업의 최근 2개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조표, 손익계산서) 텅 발급분만 인정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0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3		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0				
4	차별성 검토 보고서 * NTIS(www.ntis.go.kr)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유사도 60%로 설정) 하여 검색 결과증(PDF파일 다운)을 제출 (상세내용은 FAQ 참고)			0				
		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최종평가확인서			0			
	위대점 증빙서류	중기부 장관 표창장			0			
		중소기업 R&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0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0			
(5)		여성기업확인서			0	스캔본 업로드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0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사본)			0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0			
<u> </u>	шот	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미 지계조비소 어그의 차여이처나			0			
<u>6</u>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7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0				
9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Ο				